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256호
- 나. 발의자 : 김혜영 의원(찬성자 40명)
-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는 민간축제 지원 시 특정 단체의 반복 지원을 제한하는 등 보조금 지원의 편중을 방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성과가 입증된 축제사업의 연속성까지 일률적으로 제약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반복지원 제한의 형평성 원칙은 유지하되, 성과 우수단체 등 예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시 민간 축제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정 단체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안 제16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민간 축제 지원할 때 특정 단체에 대한 반복 지원을 제한하여 지원의 형평성 원칙을 유지하되, 경쟁력 있는 축제사업은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빌의되었음.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서울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축제 발전 기반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제정 되었으며,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우수한 축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의 법적 기반이 되었음.

○ 서울의 민간 축제는 2021년~2022년 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취소 되거나 온라인 및 소규모 형태로 축소되는 등 심각한 쇠퇴기를 겪었으나, 엔데믹 이후 최근에는 K-팝, K-뷰티 등 세계적으로 인지

도가 높아진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민간 축제들이 활발하게 재개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최근 민간 축제의 수와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양적 성장에 따라 민간 축제는 단순히 문화 향유를 넘어 서울 관광을 견인하는 핵심 콘텐츠로서 국내외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질적 성장도 함께 요구되는 상황임.
- 동 개정안이 제안한 서울시 민간 축제지원 사업에 대한 반복 지원 제한 규정은 서울시의 축제를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확장하면서도 관광 콘텐츠로서 도약하기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제한 조항 추가(안 제16조제5항)

- 서울시는 현행 조례를 근거로 직접 추진하는 축제사업 외에 민간 축제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축제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서울 소재 문화예술 법인과 단체가 관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 축제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축제의 직접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지난 3년간의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신청 건수와 선정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도 함께 증가하였음. 특히, 신규 선정 지원 단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울시는 예방 중심의 상시 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음.

< 2022~2024 민간축제 지원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건 수	예 산	건 수	예 산	건 수	예 산
신 청	256	17,375	219	19,183	286	19,118
선 정	58	3,050	92	6,282	134	7,712
신규지원	31건, 1,225백만원(40%)		51건, 3,299백만원(53%)		79건, 3,294백만원(43%)	

- 또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¹⁾과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을 근거로 3년 연속 또는 5년간 4회 지원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²⁾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한 반복 지원을 제한하고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문화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민간축제 반복지원 제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민간에게 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 따라서, 동 개정안이 제시한 민간축제 지원 시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 제한’으로 구체화하여 특정 단체의 반복 지원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시민에게 사업의 공정성을 알리고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효과성을 높이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여 축제평가단에 의하여 실시된 축제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심의 시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음.
 - 전년도 축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 차등 지급
 - 전년도 평가 최하위 “라”등급의 경우 보완계획서 정구 후 조건부 지원
 - 축제평가 결과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라”등급 선정 제외

- 다만, 동 개정안이 제시한 기준이 현재 서울시에서 민간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일몰제와 상이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서울시 지침과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 수정 의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축제의 지원 · 육성) ① ~ ④ (생략)	제16조(축제의 지원 · 육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축제의 지원 · 육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u><신 설></u>	<u>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u>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단체의 경우 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u> 다만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의안번호
3256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 의	제 안 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혜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해당없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축제 지원 시, 특정 단체의 반복 지원을 제한하면서 예외적 지원근거도 명시함<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이상 지원 제한을 원칙· 성과 우수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10.20.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부 서 검 토 의 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축제 지원 시 특정 단체의 반복 지원을 제한하고, 성과 우수 단체 등 예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만 조례개정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할 필요가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안) 최근 3년 연속, <u>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u> 지원 제한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최근 3년 연속, <u>최근 5년 이내 4회 이상</u> 지원받은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한다.		
대응방안			
상 임 위 처 리 결 과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팀장	김나연(☎2133-2569)
			담당 정유진(☎2133-2570)